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책은 없는가!

농림부, 산업연수제 도입 위해 소요량 파악 등 검토에 나서

◇ 취재 / 김동진 기자
(dj@poultry.or.kr)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 문제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에 끝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신고기간 동안 20여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출국 준비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자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월 12일 정부의 경제 장관회의에서 불법체류 자진신고자에게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을 골자로 한 ‘불법체류 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정부에 따르면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3월 25일부터 두달간을 불법체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설정, 자진신고자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내년 3월까지 출국준비 기간을 주기로 하였으며, 중국동포 친지방문 시 허용 대상이 오는 7월까지 45세 이상으로, 올해말까지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친지 방문으로 입국한 뒤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체류기간을 1~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쓰는 사업장

에서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1년 후에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노동력 공백에서 오는 어려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양계업에서도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양계장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실태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일부로 기용한 농장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95년 본회에서 양계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 고용희망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조사업체수 540개소중 244개소(양계장 226개소, 도계장 17개소, 기타 1개소)에서 1,006명의 고용인력을 희망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양계장의 경우는 조사대상농가(522농가) 중 희망업체수는 226농가에서 평균 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보면 현재 5천여 전업농가중 2~3천여 농가에서 고용을 희망한다고 볼 때 6,000~9,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는 아직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외국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번 불법체류 신고기간을 통해 많은 농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사실상 신고를 한 농장은 1년후를 걱정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아래저래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양계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으며, 농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약 33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중 8만여명의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을 제외하면 약 25만명(76%) 정도가 불법체류자라고 볼 수 있다. 불법 체류자 대부분이 3D 업종(양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만약 불법 체류자 전체가 없어진다면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공단 같은 경우 불법 체류자가 없어진다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생산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중소기업, 선박, 건설 분야에서 국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시된다해도 연수기간(1년)과 취업기간(2년)이 지나면 이중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작업장을 탈출하여 불법체류자로 남게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 의거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를 도입,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국내에서는 노동부(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건설교통

부에서 시행기관을 선정하여 산업연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체를 위해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 해주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지난 1993년 11월 1차로 2만명의 산업연수생이 들어온 이후 지속적으로 인원증가가 이루어지다 1996년부터는 79,000명으로 인원을 동결시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건설협회와 수산업협동조합을 시행기관으로 두고 각각 현재 2,500명과 1,300명의 산업연수생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는 8만여명의 산업연수생이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분야의 산업연수제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현재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필요성 검토를 위해 관련업계를 통해 소요량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도입과 시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해법을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본회에서는 불법체류자 해결책의 일환으로 국내 양계장에서는 6,8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에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양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인 만큼 이들을 양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완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농림부에서도 농장에서 원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